##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66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 강준현 · 김용만 · 김재원

김현정 • 박민규 • 박선원

서영석 • 유준병 • 이인영

조정식 · 천준호 의위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으로 징역형 또는 배수벌금형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이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2022헌가6, 2024. 7. 18.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허위재무제표작성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도입함으로써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 법률 제 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벌칙) ① 「상법」 제401	제39조(벌칙) ①		
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			
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			
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			
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			
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			
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			
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lt;단서 신설&gt;</u>	<u>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u>		
	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		
	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u>10억원으로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